

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농어촌  
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2 월 1 일

여 수 시 장

2022.12.01



여수시 조례 제1807호

붙임 여수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보건소장” 을 “해당 업무 담당 국·소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여수시 <u>보건소장</u> 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②. (생략)	제9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 업무</u> <u>담당 국·소장</u> ----- -----. ②. (현행과 같음)